

의안번호	제4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 
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**

발의자	강현삼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4년 7월 7일

##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의안 번호	4
----------	---

발의연월일 : 2014년 7월 7일

발 의 자 : 강현삼, 이양섭, 정영수,  
이종욱, 박봉순, 김학철,  
최광옥 의원

### 주 문

-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붙임과 같이 요구합니다.

### 제안이유

-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과 주요안건 처리 및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2항 및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

###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
-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

붙임 :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1부.

##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2항 및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 제1항에 따라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◇ 출석일 :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일

- '14. 7. 16.(제1차 본회의), '14. 7. 25.(제2차 본회의)

※ 의사일정 변경으로 본회의 개의일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추가 및 변경된 날을 출석일로 함

◇ 출석장소 :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

◇ 출석이유

-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

- 주요안건 처리

-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 등

◇ 출석대상

- 충청북도지사, 충청북도교육감

- 「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부지사·부교육감, 도지사의 보조 및 보좌기관 중 실·국·원·단·본부장·공보관·여성정책관, 충북자유구역청장·충북도립대총장,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국장·감사관·기획관

## 참고사항(관계법령)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

제73조(도지사등의 출석요구)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, 출석요구를 받은 도지사가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가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.